

의안번호	2213563
의 퇴 인	이용우의원
회 답 일	2025.10.22.
추 계 번호	25B5546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7조의 2(업무상 질병의 인정 특 례) 신설	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상당기간 유해·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함(제1항)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구체적인 질병명,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업무상 질병의 추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7조의2 (업무상 질병의 인정 특례) 신설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참조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하여 특정 직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아 판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병, 뇌·심혈관계 질병 등은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¹⁾

1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·질병

-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, 업무의 양과 강도,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,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²⁾ 특정 직종의 종사자에게 발병한 근골격계 상병³⁾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⁴⁾에 규정된 종사 기간과 유효기간(업무 중단 다음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) 등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함
-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·흥분·공포·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⁵⁾을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, 지주막하출혈, 뇌경색, 심근경색증, 해리성 대동맥자루⁶⁾가 발병한 경우 고시⁷⁾된 기준⁸⁾ 등을 충족하면 업

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다만,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(相當因果關係)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업무상 질병

- 가.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(因子),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- 나.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- 다.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- 라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

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(진폐증은 제외한다)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- 2) 1)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
- 2)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
- 3)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
- 4) 진동 작업
- 5)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
- 3) 경추간판 탈출증, 요추간판탈출증, 회전근개파열, 반월상연골파열, 수근관증후군, 삼가섬유연골파열, 드퀘르벵, 팔꿈치상과염
- 4)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0호
- 5) 1)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·흥분·공포·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
- 2) 업무의 양·시간·강도·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·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
- 3) 업무의 양·시간·강도·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·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
- 6)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
- 7)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0호
- 8) 1)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(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.
- 2)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. 특히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(업무부담 가중요인)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.
 -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
 - ② 교대제 업무
 -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
 - ④ 유해한 작업환경(한랭, 온도변화, 소음)에 노출되는 업무
 -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
 -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

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함

-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상당기간 유해·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업무 관련성에 대한 추정의 원칙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되는 질병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질병명과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업무상 질병의 추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
 - 개정안의 시행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건수가 증가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(이하 “산재보험”)기금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장래에 발생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의 증가 규모와 이로 인한 산재보험 급여의 지출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
 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

3)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.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assembly.go.kr